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28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무역구제정책팀 나기용 팀장, 홍장의 서기관(5553), 최경신 사무관(4965),
조부임 사무관(5552)
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, 최용이 사무관(5565), 김진주 주무관(4956)
불공정무역조사팀 이상준 팀장, 위민이 사무관(5584)

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

- 돈육가공 및 염모제·페인트등 5개 기업에 FTA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홍순직)는 '13.9.27(금) 제320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○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에 대해서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

□ 돈육가공 3개 기업은 한-EU FTA 발효('11.7)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인정받음

* EU산 돼지고기 수입액(백만불) : ('11상) 284 → ('12상) 316, 11.2%↑

□ 염모제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2개 기업도 한-EU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인정받음

* EU산 염모제 수입액(천불) : ('11하) 5,778 → ('12하) 7,412, 28.3%↑
* EU산 페인트 수입액(천불) : ('11상) 7,216 → ('12상) 9,846, 36.4%↑

□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5개 기업은 「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,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

<붙임>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및 조사·지원 현황

붙임 | **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및 조사·지원 현황**

□ **(개념)**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FTA 체결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□ **(요건)** 신청기업의 피해가 FTA로 인한 수입이 주된 원인일 것

① FTA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
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·고용·가동률·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②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·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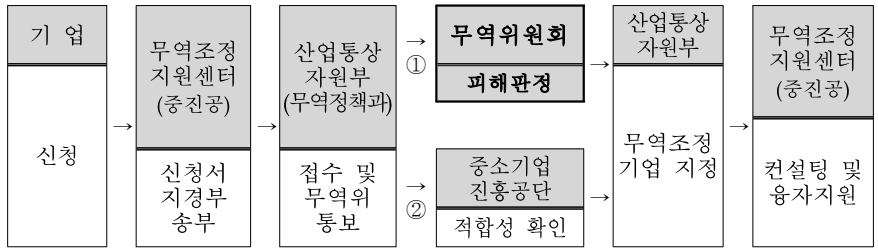
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,

○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

*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**(피해판정현황)** ‘13년(9월 현재)에 총 40건을 판정 하였으며, 이 중 30건에 대해 피해판정

<무역조정 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(단위 : 개사)>

구분	’08년	’09년	’10년	’11년	’12년	‘13년	누계
판정 건수	3	3	2	-	13	19	40
피해 판정	2	3	2	-	8	15	30
피해 없음	1				5	4	10

* ‘13.9.27일 현재

○ **(품목별)** 총 30건의 피해 판정 중 돈육가공기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핸드백, 복분자주, 등산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판정

* 판정품목: 머루주, 시계, 염장고등어, 복분자주, 골프웨어, 도료경화제, 티셔츠, 탈모방지샴푸, 초콜릿, 방적기계부품, 와인, 등산화, 스포츠용신발, 에틸렌글리콜

○ **(협정별)** 한-EU FTA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한-ASEAN, 한-칠레 FTA도 각각 4건으로 많은 비중으로 차지

* 한-EU(18), 한-ASEAN(4), 한-칠레(4), 한-EFTA(2), 한-미(1), 한-싱가폴(1)

□ **(지원내용)** 컨설팅 자금 및 융자 지원

*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소요비용의 80% 지원(기업 당 40백만원 한도)

○ 융자 :

- 대출 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3%p차감(기준금리)

* ’13년 3/4분기 현재 3.27%
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, 운전자금 5년 이내
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45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○ 지원현황 : 피해판정 22건(융자지원 65.6억원, 상담지원 1.4억원)

* 연도별 지원(억원): (‘08)5.7→(’09)6.3→(‘10)22.5→(’11)0→(‘12)18.6→(’13)13.9

* ‘07년 4월 ~ 2013년 8월(9월 피해판정 8건은 융자 및 상담 지원 절차 진행 중)